



#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공공기관평가과 박소희 분석관

##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

###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발표(2026.1.29.)

-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11개 증가한 총 342개 기관을 2026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이라 함) 제정('07년) 이후 최초로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 공개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300명 기준)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2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

[표 1]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단위: 개)

구분	'25년(a)	'26년(b)	증감(b-a)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1	30	△1	-	-	△1
시장형	14	14	-	-	-	-
준시장형	17	16	△1	-	-	△1
② 준정부기관	57	58	+1	-	-	+1
기금관리형	12	12	-	-	-	-
위탁집행형	45	46	+1	-	-	+1
③ 기타공공기관	243	254	+11	+11	-	-
계	331	342	+11	+11	-	-

[표 2] 2026년도 신규 지정 및 유형 변경된 공공기관

구분(개)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1)	관세청	한국관세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성평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해수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문체부	한국스포츠레저(주)	
	데이터처	(재)한국통계진흥원	
	기후부	한국물기술인증원	
	농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행안부	전국재해구호협회	
유형변경 (±2)	방미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6.1.29.를 바탕으로 재작성

###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금융감독원을 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이상 경영관리 강화, 금융감독 전반쇄신 등 금융감독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유보함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분류 기준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 공기업은 자산규모(2조원)와 자체수입비율(총수입의 85%)을 기준으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분류
- ※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표 3] 공공기관 분류기준

유형		분류기준			
공기업	시장형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위탁집행형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차이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재정경제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됨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경영평가, 임원의 임면, 재무 등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어 기타공공기관은 이에서 제외
  -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되,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의 필요

[표 4]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관리체계 비교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가	재정경제부 경영평가 대상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임원	공공기관운영법상 임면절차* 적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공운위 의결 등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재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2022.8.18.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지정 관련 쟁점 (1)

###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

- 법령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으로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수가 정원 기준(300명)에 미달하는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문제 발생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서는 ① 직원 정원, ② 수입액, ③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5개가 정원 기준(300명)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되었음
- \* (정원) 50명 → 300명, (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 10억원 → 30억원

단순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타공공기관 변경

[표 5] 정원 기준 상향 조정(2023.1.) 이후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현황

연도	변경 유형	기관 현황
2023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269), 인천항만공사(268), 여수광양항만공사(173), 울산항만공사(116)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34), 서민금융진흥원(282) 등 39개 기관
2025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231)
2026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97)

주: 괄호 안은 2025년 말 기준 정원(명)임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및 공무원연금공단과 유사한 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총수입액과 자산 규모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준을 크게 상회하나, 정원 기준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서민금융진흥원은 2024년 공공기관 지정 시 정원이 250명으로 정원 300명 기준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정부 정책사업 등으로 인해 총수입액 2.4조원, 자산 5.3조원 규모임

[표 6]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일부 기관의 수입액, 자산 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기관명	정원	총수입액	자산
대한석탄공사	231	217,925	421,99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34	6,921,400	28,747,250
서민금융진흥원	282	2,354,420	5,295,304
부산항만공사	269	371,064	8,050,165
인천항만공사	268	252,950	3,691,96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97	137,813	435,313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300	20,000	3,000

주: 정원은 2025년 말 기준, 총수입액은 2022~2024년 평균, 자산은 2024년 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제외 문제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된 다수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요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모니터링이 제약됨
  - ※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②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석탄공사는 2024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적립금 소진이 예상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며,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사전적 모니터링이 제약됨

[표 7]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중 재무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기관

기관명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	
대한석탄공사	2024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 정부의 손실보전가능 조항 존재 및 금융부채 2.4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장기적으로 적립금의 소진 등이 추정됨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비율 급증(2018년 29%→ 2024년 379.6%)	
부산항만공사	공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보증가능조항	금융부채(억원): 2019년 19,025 → 2024년 39,369
인천항만공사		금융부채(억원): 2019년 9,174 → 2024년 13,103

주: 정원은 2025년 말 기준, 총수입액은 2022~2024년 평균, 자산은 2024년 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관의 총수입액, 자산 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3년 정원 기준 상향 조정 시 재정경제부는 ① 舊 「중소기업기본법」<sup>4)</sup>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②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감안하여 300명으로 상향하였다는 입장이나,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등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 적용 타당성 논의 필요
- 따라서 정원, 수입액,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현행 방식에서 일부를 충족하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과 바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음

공공기관 지정  
관련 쟁점 (2)

▪ 공공기관 미지정 판단 기준의 타당성 및 일관성 제고 필요

- 2026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였으나, 판단 기준의 근거 및 기준 적용 일관성이 미흡하여 실제 공공기관 지정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저하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미지정기관은 2026년 기준 183개임

[표 8] 2026년 주요 미지정 사유 및 미지정기관 수

(단위: 개)

① 소규모 기관 (정원 40명 미만)	② 단순업무 위탁 자회사	민간 경쟁 자회사	기타(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합계
61	51	15	56	183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6.1.29.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규모 기관 판단  
근거의 자의성 문제

- ① 미지정 사유 중 소규모 기관 기준(40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재정경제부는 소규모 기관(정원 40명 미만)을 미지정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3년 또는 5년 연속 정원이 40명 미만임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중임

[표 9] 정원 40명 미만 일부 공공기관의 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주무부처	지정연도	정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	40	41	33	34	33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2012	34	36	36	38	38

주: 각 연도 말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반해 미지정된 소규모 기관 중 사업의 공공성, 수행 기능, 수입액 및 자산 규모 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지정 검토가 필요한 기관들도 존재함
- ▷ 한국법령정보원은 2025년 말 기준 정원이 39명이나, 정부지원액 비율이 80.4%로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규정한 정부지원액 기준(50%)을 초과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사업을 정부에게 수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공공성이 있음
-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수행 업무가 별정우체국직원의 연금 관리로 국민·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과 유사하고, 수입액이 약 510억원, 자산 규모가 약 1,050억원에 이르는 등 정원 기준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수준을 상회하는바,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필요

[표 10] 공공기관 지정 검토가 필요한 일부 기관의 일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기관	정원	수입액	자산 규모	정부지원액 비율
사업 공공성	한국법령정보원	39	4,996	12,751	80.38
사업 수행 기능 및 수입액·자산 규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6	51,025	104,980	89.21

주: 정원은 2025년 말 기준이며, 수입액 및 정부지원액 비율은 2022~2024년 평균, 자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임

자료: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소규모 기관일지라도 기관의 역할, 수입액 및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관리체계에 편입해 통제·평가 등을 받도록 지정을 검토할 필요

단순업무 위탁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의  
일관성 결여

- ② 단순업무 위탁 자회사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미지정된 기관이 혼재되어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 동일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 공사 100% 출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전MCS<sup>2)</sup>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한전FMS<sup>2)</sup>와 한전CSC<sup>2)</sup>는 미지정되는 등 ‘단순’업무의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음
    - ▷ 한전MCS는 전기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및 수금 등의 활동을 하는 회사이며, 한전FMS는 한전의 시설(지사, 변전소 등) 관리서비스, 한전CSC는 전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100% 출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는 미지정됨
    -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이용료를 수납하며,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시설물관리 및 보안, 미화 업무를 수행함
  -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당시 재정경제부는 한전MCS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보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한전CSC 또한 민원 상담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서비스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순업무 위탁 자회사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은 객관적 지표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 판단의 자의성이 높음을 시사함

[표 11] 주요 미지정 단순업무 위탁 자회사

구분	기관
미지정 단순업무 위탁 자회사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주)캠코에프엠씨, 한전CSC, 한전FMS, 코가스보안관리 등 51개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6.1.29.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손자회사  
등 공공기관 지정 및  
심사 대상 제외 문제

▪ 공공기관의 손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및 심사 대상 제외 문제

-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손자회사 등을 지정 및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제5호<sup>3)</sup>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제5호 해당)가 50% 이상 출자 중인 기관(손자회사)들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코스포영남파워(주), 이더블유피서비스(주), 한전기술서비스(주)는 각각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가 100%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
    - ▷ 대표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문제가 제기된 코스포영남파워(주)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 중인 한국남부발전(주)의 100% 출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범위에 불포함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임

2) 한전MCS(Metering & Customer Service), 한전FMS(Facility Maintenance Service), 한전CSC(Contact Service & Communication)

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표 12] 공공기관 손자회사(예시)

구분	수행업무	지분 보유 기관	지분율 (%)	임직원 수 (명)	자산 규모 (억원)	매출액 (억원)
코스포영남파워(주)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한국남부발전(주)	100	63	3,719	4,120
이더블유피서비스(주)	경비, 위생, 시설관리 등	한국동서발전(주)	100	476	53	271
한전기술서비스(주)	건축물 유지관리용역 등	한국전력기술(주)	100	183	84	169

주: 임직원 수는 가장 최근 공시된 기업개황자료, 자산 규모 및 매출액은 2024년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손자회사 등을 지정 및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손자회사는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및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방만경영 요소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손자회사도 지정 및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

**민간 경쟁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또는 민간 이양 검토 필요**

▪ **미지정기관 중 민간 경쟁 자회사의 관리 방향 정립 필요**

- 민간 경쟁 자회사의 경우, 수행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거나 민간 영역에서 자율성·기업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은 중장기적 민간 이양 방안 검토 필요
- 재정경제부는 미지정기관 중 민간 경쟁 자회사(15개)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 서울대학교병원 자회사인 이지케어텍(주), 중소기업은행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주), IBK연금보험(주), IBK저축은행 등, 한국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생명(주), 산은인베스트먼트(주), 산은캐피탈(주) 등
- 정부는 민간 경합을 지양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경영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은 수행 업무의 성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민간 이양 방안을 검토할 필요

[표 13] 미지정기관 중 민간 경쟁 자회사

주무부처	기관
교육부	이지케어텍(주) <sup>1)</sup>
금융위원회	(주)IBK벤처투자, (주)아이비케이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주),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주), KDB생명(주), 산은인베스트먼트(주), 산은인프라자산운용(주), 산은캐피탈(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아리랑TV미디어

주: 1) 이지케어텍(주)는 의료 IT 전문 기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HIS)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함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6.1.29.를 바탕으로 재작성

## 향후 과제

###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요건의 경직성 완화 필요

- 정원, 수입액,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현행 방식에서 일부를 충족하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중 정원 기준(300명)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기관의 재무 규모 및 기능과 관계없이 정원 기준 미달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무건전성 및 정부·국회의 통제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 발생 가능

### ▪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필요

- 공공기관 지정 기준 및 미지정 사유의 법적 명확화 필요
  - 2026년도 지정은 처음으로 미지정기관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는 사후적 정보공개에 그치며, 어떤 경우에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지정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 미지정 사유를 분명히 할 필요
    -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기관에 대해 일관된 지정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지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움
    - ▷ 미지정 사유는 법률상 명시적 기준이 아닌 정책적 판단 또는 행정·편의적 분류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 지정 기준과 예외 기준 자체가 법령상 보다 구체화되지 않는 한 비슷한 조건의 기관에 대해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지정 사유 공개는 지정 기준의 불명확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소한 것은 아님
-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손자회사 등을 지정 및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공공기관 손자회사의 방만경영 요소 등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손자회사 또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

### ▪ 공공기관 민간 경쟁 자회사의 관리 방향 정립 필요

- 정부는 민간 경쟁 자회사의 경우 기관의 공공성 수준 및 기능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또는 민간 이양을 검토할 필요

### ▪ 공공기관 지정 관련 국회 제출자료의 제도화 필요

- 법령 요건과 달리 지정·미지정 또는 유형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재정경제부가 대상 기관의 재무·정원·정부지원 규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검토사유, 예외 판단의 법적 근거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여 국회의 제도 점검과 국민의 제도 검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